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가단1072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 종결2022. 5. 18.

판결 선고2022. 6. 22.

주 문

1. 피고들과 D이 2019.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9. 5. 24. 접수 제19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9. 5. 24. 접수 제19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11. 23.경 D과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7. 11. 23. D과 사이에, D이 위 자동차장기대여계약에 따라 차량인도 후 부담하는 임차료, 초과운행부담금 및 해지위약금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12. 1.부터 2021.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9,675,000원으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 3) D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자동차장기대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9. 5. 21.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회사에 8,725,290원을 지급하였다.
- 4)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1. 10. 14.을 기준으로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원금 8,725,29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2021. 10.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865,290원을 합한 금10,590,580원이다.

나. 피고들과 D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 28.경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C와 D, G(각 상속지분 2/9)이 망 F을 상속하였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4. 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4.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D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D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이전에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이 취득한 D의 상속지분 1/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훈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시기를 2019. 3. 28.로 기재하였으니, 2019. 4. 1.의 오기로 보인다.